

의안번호	제89호
의결 연월일	2014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강현삼 의원 등 7명
발의연월일	2014년 12월 1일

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강현삼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9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14. 12. 1.

발의자 : 강현삼, 박병진, 임순묵,
김봉회, 이광진, 임현경,
엄재창

1. 개정이유

상위법령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고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재난관리기금의 관리사항 변경(안 제3조)
- 나. 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 근거조항 변경(안 제5조)
- 다.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위촉요건 규정(안 제8조)
- 라. 기타 용어정비 등(안 제7조, 제8조의2, 제10조의2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 : 균형건설국 치수방재과와 협의

라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75조제3항”을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75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기금의 관리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75조제2항에 따라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(이하 이 조에서 “의무예치금액”이라 한다)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.

제4조 중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8조제2항”을 “법 제68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영 제74조제1항제7호”를 “영 제74조제6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70퍼센트”를 “100분의 70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5퍼센트”를 “100분의 5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2호 중 “기금운용원”을 “기금운용관”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위원회의 위원장”을 “위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위촉직 위원의 3분의 1이상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8조제6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”를 “하되”로 한다.

제8조의2제3항 중 “해촉될”을 “위촉을 해제할”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위원회의 회의”로, “출석과”를 “출석으로 개의하고”로 한다.

제10조의2 단서 중 “그러하지 아니하다”를 “예외로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75조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기금의 관리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75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에 위탁하여 관리한다.</p> <p>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75조제4항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조(기금의 관리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75조제2항에 따라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(이하 이 조에서 “의무예치금액”이라 한다)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.</p> <p>제4조(기금의 용도) ----- 법 제68조제2항-----</p>

“법”이라 한다)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제5조(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용자 등) ① 도지사는 영 제7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.

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용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용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용자기금 규모와 용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.

③ 용자금의 금리는 5퍼센트 이하로 하되 변동금리를 적용하고, 용자기간은 2년거치 후 3년 동안 똑같이 나누어 상환한다.

④ (생략)

제7조(회계공무원)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

-----.

제5조(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용자 등) ① ----- 영 제74조제6호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 10
0분의 70 -----

-----.

③ ----- 100분의 5 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7조(회계공무원) ① -----

-----.

1. (생략)

2. 분임 기금운용원 : 재난업무
담당과장

3. (생략)

② (생략)

제8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·

② (생략)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
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재난업
무 담당국장이 된다.

④ (생략)

<신설>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
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원
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
는 기간으로 한다.

⑥ (생략)

제8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
피 등) ①·② (생략)

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
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
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
촉될 수 있다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 기금운용관 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·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위원장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위촉직 위원의 3분의 1이상
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
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
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
한다.

⑥ ----- 하되---

--.

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

제8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
피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위촉을 해제할
-.

제10조(위원회의 운영) ①·②
(생략)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의2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0조(위원회의 운영) ①·②
(현행과 같음)

③ 위원회의 회의----- 출석으로 개의하고 -----
-----.

제10조의2(수당 등) -----

----- 예외로 한다.

관 계 법 령

[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]

제67조(재난관리기금의 적립)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「지방세법」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0.6.8.]

[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]

제74조(재난관리기금의 용도)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.

<개정 2012.8.23., 2014.2.5.>

1.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
2.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(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·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) 및 보수·보강
3. 재난피해시설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)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
4.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
5.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

6.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
7.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·연구
8.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

[전문개정 2011.6.27.]

제75조(재난관리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의무예치금액"이라 한다)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. <개정 2014.2.5.>

③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「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4.2.5.>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14.2.5.>

[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]

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.]

[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]

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)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